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일시 2021. 10. 26.(화) 14:00~17:00

장소 천안 스마트워크센터 이벤트홀



| 주최 |  충청남도

| 주관 |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일시 | 2021. 10. 26.(화) 14:00~17:00

장소 | 천안 스마트워크센터 이벤트홀



PROGRAM

시간	내용
~14:00	참가자 접수 및 발열체크
14:00~14:05	개회식 -참석자 소개, 행사안내
14:05~14:10	환영인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 축사 - 충청남도청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14:10~14:30	기조발제 I - 사)충청남도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신아롱 국장
14:30~14:50	기조발제 II -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정세은 청소년
14:50~15:00	휴식
15:00~16:30	주제토론 -좌 장: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 -토론자1: 충청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토론자2: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원희 교수 -토론자3: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이현주 장학사 -토론자4: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음수빈 위원장
16:30~16:50	질의응답
16:50~17:00	기념촬영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일시 | 2021. 10. 26.(화) 14:00~17:00

장소 | 천안 스마트워크센터 이벤트홀



CONTENTS

기 조 발 제

사)충청남도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신아롱 국장 “충남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07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정세은 “19살의 나는 왜 노동인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21

주 제 토 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운영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우리의 역할”	2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원희 교수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3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이현주 장학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변화”	39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음수빈 위원장 “청소년 노동인권의 어떤 부분을 목소리 내야 하는가”	49

기조발제

충남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신아롱 국장
사)충청남도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신아롱 국장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인권과 문화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과 문화의 증진을 촉진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초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 인권, 문화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역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일하는 학교 안·밖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인 소속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들과 함께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입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취지 및 배경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중등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포함하라는 내용 권고 발표
-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과로로 쓰러져 현재까지 뇌사 상태
- 현장실습생 산재사고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 의지 표명 및 중앙 정부·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촉진
- 2017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정해지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
- 2018년 말 기준 50여개의 자치단체,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 2020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제도화 과정에 돌입

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 연혁

- 2014년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출범
- 2014년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시작

- 2015년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양성(기초+심화)
-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작
- 2015~2016년 충남도교육청 청소년 알바수첩 제작
- 2017년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설립
- 2017년 6월 충남도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수탁
-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캠프 진행
- 2017년 특성화고 교사 청소년 노동인권 연수
-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양성교육
- 2017년 12월 충남도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수탁 종료
- 2018년 청소년노동인권 캠프(여름/겨울) 진행
- 2018년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행
- 2019년 서산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진행
- 2019년 청소년 노동상담 매뉴얼 발간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사업]
-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가이드북 발간 [충남도교육청 용역사업]

3. 시도별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현황

- 전국 시·도의 노동인권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6개 광역지자체-경기,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제주-가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함.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를 필두로 관련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고 충남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15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2021년 8월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되어 충남도교육청 조례는 자동 폐지되었음.

<표1> 시도별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
경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6.07.19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2015.10.01
대전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 조례	2015.12.18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2019.04.10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1.07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21.08.17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5.12.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08.09

- 광주광역시 2016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위탁 운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광주 YMCA, 비정규직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법률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0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됨.
- 전라남도는 2016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별도 위탁 운영. 2020년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함께 위탁 운영함.
- 경기도를 제외하고 그 외 시도는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4.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세부 내용

〈표2〉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세부 내용

제정일자	2021.08.17
주무부서	
청소년 및 노동인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노동인권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
도지사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과 협력 : 1)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2)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실시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4)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 -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 -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노동인권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상담 및 상담원 양성, 교육 및 강사 양성, 인식 개선 및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
--	---

5. 충청남도 및 시·군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및 사업추진 현황

<표3> 충청남도 및 시·군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및 사업추진 현황

도·시·군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연령	비고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21.08.17)	9세 이상~ 24세 이하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8.04.23)	19세 미만	
아산시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16.07.15, ‘18.10.05 일부개정)	9세 이상 24세 이하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서산시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6.12.20)	24세 이하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홍성군	홍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8.11.15)	24세 이하	

-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시·군마다 상이함. 청소년의 연령 및 정책 대상 범위는 천안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자로 정의함. 아산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로 정의함. 서산시와 홍성군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인자로 해당 시(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범위로 함.
- 아산시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상담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산시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두 기관 모두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민주노총 서산·태안 위원회가 수탁 기관임.

- 천안시와 홍성군은 청소년노동인권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반대로, 당진시의 경우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당진시비 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6.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아산시, 서산시와 같이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과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천안시, 홍성군과 같이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군과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 또한, 논산, 부여, 보령, 서천, 금산 등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군의 경우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총괄할 도 단위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 9조 ③항에는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4>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전담기구 설치 근거

<p>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p>
--

-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 9조 ③항은 학교 안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이처럼,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충남’ 을 만들기 위한 큰 틀의 비전은 제시되어 있음. 이 비전을 추진할 다양한 인프라도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영역과 도교육청, 충청남도의 행정의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야 할 단계와 있음.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 <표5>와 같음.

<표5>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후 기대효과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후 기대효과
<p>[충청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상담-권리찾기’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 보호 ○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과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11개 시·군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년 고용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 문화 확산 ○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 청소년 인권 및 노동 존중 문화 확산 <p>[충청남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배움으로 싹트는 학교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양·질의 확장 ○ ‘교육-상담-권리찾기’의 원-스톱 상담체계 구축 ○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 보호 ○ 교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와의 협력 ○ 청소년노동인권 교재 공동 개발 및 사례 공유 ○ 교사 및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의 역량 강화 ○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배움의 민주주의 확대 ○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 충청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간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없는 11개 시·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 문화 확산,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청소년 인권과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 효과를 가져옴.
- 반면, 도교육청은 ‘인권’ 과 ‘노동의 가치’ 가 배움으로 싹트는 학교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의 양질의 확장을 통해 ‘노동’ 의 가치, ‘노동인권’ 감수성이 높아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교사와 지킴이(강사)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교재 개발 및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사 및 지킴이(강사)의 역량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교육-상담-권리찾기’ 의 원-스톱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동시에 교육-노동상담-권리찾기를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배움의 민주주의일 것임. 이 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충남 청소년 노동상담 및 권리찾기지원 현황

<그림1> 청소년 노동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은 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알바 Tip!

1. 나의 노동조건 체크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시급) 임금
-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 1일 7시간
- 주휴수당
- 휴게시간 유무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2.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면

- 채용공고라도 스샷!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받지 못 했다면?



스샷!



찰칵!



출근, 퇴근 기록

“잠깐! 근로계약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매우 중요!

앱을 다운받아서 기록!!



<표6> 충남청소년노동상담 및 권리찾기 현황 비교표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노동상담 건수	사건대리 건수	금 액 ¹⁾	노동상담 건수	사건대리 건수	금 액 ²⁾
도교육청	177	2	3,923,000	227	10	10,551,844
지킴이 (강사)	247	12	12,100,627	162	13	16,122,816
합 계	424	14	16,023,627	389	23	26,674,660

(단위:원)

○ 충남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위촉노무사제도를 통해 청소년노동상담 및 권리찾기를 진행해 왔음. 위촉노무사를 통한 도교육청의 노동 상담 건수는 177건이며 이 중 권리찾기 대리 건수는 2건임. 권리 찾기 금액은 약 390만원임. 2019년도에는 노동 상담 건수가 227건이며, 권리찾기 대리 건수 10건, 권리 찾기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이룸.

1) 사업주와의 합의 및 사건 대리를 통해 권리를 찾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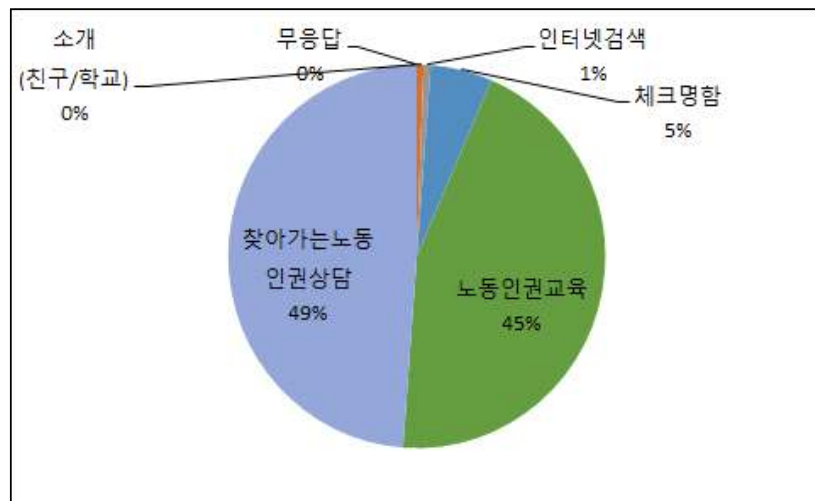
2) 사업주와의 합의 및 사건 대리를 통해 권리를 찾은 금액

- 반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를 통한 노동 상담 건수는 2018년도 247건, 이중 권리찾기 대리 건수는 12건,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에 이릅니다. 2019년도 노동 상담 건수는 162건, 권리찾기 대리 건수는 13건, 금액으로는 약 1600만원에 이릅니다.
- 도교육청 위촉노무사제도를 통한 상담보다 학교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지킴이를 통한 노동 상담 및 권리찾기 대리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청소년노동인권 지킴이를 통한 노동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을 통해서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상담이 76건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³⁾

<표7> 2019년 청소년노동상담 유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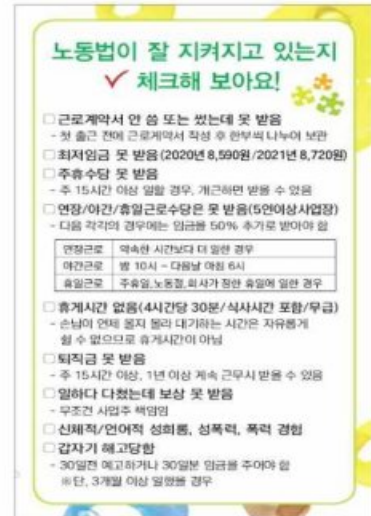
상담, 방문 동기(중복체크)					
무응답	소개 (친구/학교)	인터넷검색	체크명함	노동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
0	1	1	9	76	83

<그림2> 2019년 청소년노동상담 유입 경로 통계



3)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매뉴얼> 참조, <2019년 청소년노동인권상담 매뉴얼>은 충청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제작되었음.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강사)는 노동인권교육 후 향후(졸업 후 포함)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명함을 나눠주고 있음. 명함 뒷면에는 노동법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음. 체크명함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를 노동인권교육 범주로 포함하면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상담경로는 85건에 이룸.



- <표6>, <표7>과 같이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은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유입 경로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학교’라는 공간에 찾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임. 청소년들이 가장 오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학교’에서 교육과 노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임.

<표8> 2020년 청소년노동인권상담 현황

구분	노동상담건수	사건대리건수	금액
권역별 위촉 노무사 (8명)	57	8	3,221,157원
찾아가는 노동 상담	17		
기초상담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상담 포함)	117	8	5,793,025원
합 계	191	16	9,014,182원

-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학교 구성원(교사)에게 밝히기를 꺼려함.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든, 하지 않든 청소년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노동인권인식 확장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자신의 노동조건 및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며,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게 됨. 이런 과정은 배움이 실제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줌. 이런 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임.
- 또한, 교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지킴이(강사)와의 친밀감과 라포(rapport)는 청소년들에게 노동 상담 및 권리찾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했던 지킴이(강사)가 학교 중식시간을 이용해 청소년 노동 상담 및 캠페인 활동을 하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 안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음.
- 이런 시스템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 안’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를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보호 시스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노동인권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꿈드림센터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외하고는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음. 공인노무사회 등을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가 이뤄지긴 하나 다소 문턱이 높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뤄짐과 동시에 ‘학교 밖’이라고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인권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8. 실효성 있는 권리찾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전담기구 설치 시급

-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는 교육과 상담, 권리찾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를 넘어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큰 물결로 나아가야 함.
- 큰 물결,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협치와 지역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중요함.
-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관의 행정과 결합된다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의 큰 틀의 기반이 조성될 것을 기대됨.
-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시행하는 관계 부처에 따라 시행되는 이분법적 행정을 탈피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이 가장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을 시, 학교 안·밖을 떠나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노동자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민·관 협치를 통해 시·군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구성하여 청소년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충남을 만들고 ‘노동’ 과 ‘인권’ 이 싹트는 청소년인권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조발제

“19살의 나는 왜 노동인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정세은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9살의 나는 왜 노동인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정세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청소년 노동인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청소년이 근로 환경에서 더욱더 노동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런 뜻깊은 포럼을 개최해 주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수많은 근로 청소년 중 한 명의 청소년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노동환경에서 근로했었고, 어쩌다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시전형 준비가 한창일 때, 졸업한 학교 선배의 권유로 집 주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입시 기간이 끝나면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것이니 그 전에 미리 조금씩 일을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었고, 하루빨리 스스로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경제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조금 성급하게 노동환경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따로 근로 계약서나 보건증에 대한 말씀은 일절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는 정식 출근 전 스스로 마감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세팅하고 포장하는 방법부터 포스기를 다루고 청소하는 법까지 제 근로 시간인 주말 전 평일 5일 동안 4시간씩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같은 건물에 있는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기에 학교가 끝나면 독서실로 바로 가서 가방을 두고 다시 바로 출근했고, 퇴근 후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새벽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미리 계산했던 금액에서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입금되어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시간의 직무교육에 대한 노력이 허공에 날아간 것 같아 조금은 속상했으나, 첫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원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가 생각하며 그저 지나쳤습니다.

그 후 사장님께서선 일이 익숙해진 제게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간간이 출근을 부탁하셨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여 주 30시간을 근로한 경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추가수당과 주휴수당은 단 한 번도 받질 못했고, 말씀을 드리거나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도 일 자리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에 선불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장님께서 손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꾸짖기도 하셨고, 술에 취한 손님께서 손목을 잡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셔도 사장님께서선 “빨리 따라드리지 않고 뭘 쳐다보니?”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였던 저는 ‘사회생활은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버티려 노력했으나 너무 고된 근로 환경에 결국 첫 아르바이트는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업종에서도 일했었고,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도 여러 번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나 다행히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했던 일식집 처럼 인격모독을 하거나 과하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 행위를 겪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도 식사 시간이 근무시간 중 겹칠 경우에 밥을 제공해 주시거나, 근무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있을 때 교통비를 제공해 주신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아르바이트 근로환경과 그 후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3년 4개월간의 노동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근로환경 차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21년 8월 17일에 제정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 3항,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 따라 “사용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할 것을 미리 말씀
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근로환경 차이는 세 가지 질문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준수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개선 정책자료에 따르면 사용자는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일 때 일자리를 구하던 저는
한 편의점에서 매장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시급 6,500원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변 친구들에게
시급을 물어보았고, 저에게 제안한 편의점과 같이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매장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편의점에서 근로하는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최근까지도 여전히 최저
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급 6,500원의 편의점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청소년에게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최저임금제도에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희망
합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욱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게 된 근로환경 차이 **두 번째는 ‘수습기간 교육수당, 주휴수
당,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받아야 할 급여를 모두 올바르게
받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제 첫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언급했다시피 수습기간 교육수당을 일절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는 원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했던 모든 아르바이트에선 수습기간 및 교육기간 동안
모두 시급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로환경 차이로

저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보던 중 사용자가 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계약 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년 미만 계약일 경우 최저임금이라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주휴수당은 오랜 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저는 지금껏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단 한 번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주변 지인들에게 ‘수습기간 교육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받아야 할 급여를 모두 올바르게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똑같이 물었을 때, 교육수당 또한 받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도는 적용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들은 현재 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효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를 생각하고 제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 중 효력이 없는 중요 제도들은 더욱 효력이 발생하여 많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개선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게 된 근로환경 차이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절반조차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질문할 경우 “때 되면 쓸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을 들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노동인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카오톡

#1388 플러스친구 또는 알바몬을 포함하여 다양한 앱을 통해 쉽게 작성하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관 및 관리 또한 쉽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또한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더욱 이러한 서비스나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청소년을 향해 사용자들이 이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고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라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느낀 것과 같이 청소년들은 직접 부당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이러한 점을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과 사용자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교육과 다양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가 정말 많이 존재하고, 저와 제 주변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관해 직접 찾아보거나 주변에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자세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선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발적인 근로참여를 응원하고 돕는 인식과 노동환경 분위기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조 2항,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와 같이 도에선 청소년의 노동을 위해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참여를 돕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조 4항,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는 청소년과 사용자가 스스로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가 및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면, 분명히 부당행위가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꾸준히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더 초점을 맞춰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면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충남에서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근로할 예정인 청소년 중 한 명으로서 더 쾌적한 근로환경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와 같은 노동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충남에서 끝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각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기왕이면 사회의 각박함보다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의 꿈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사회 속에서 노동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제 목소리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 정세은에게 같은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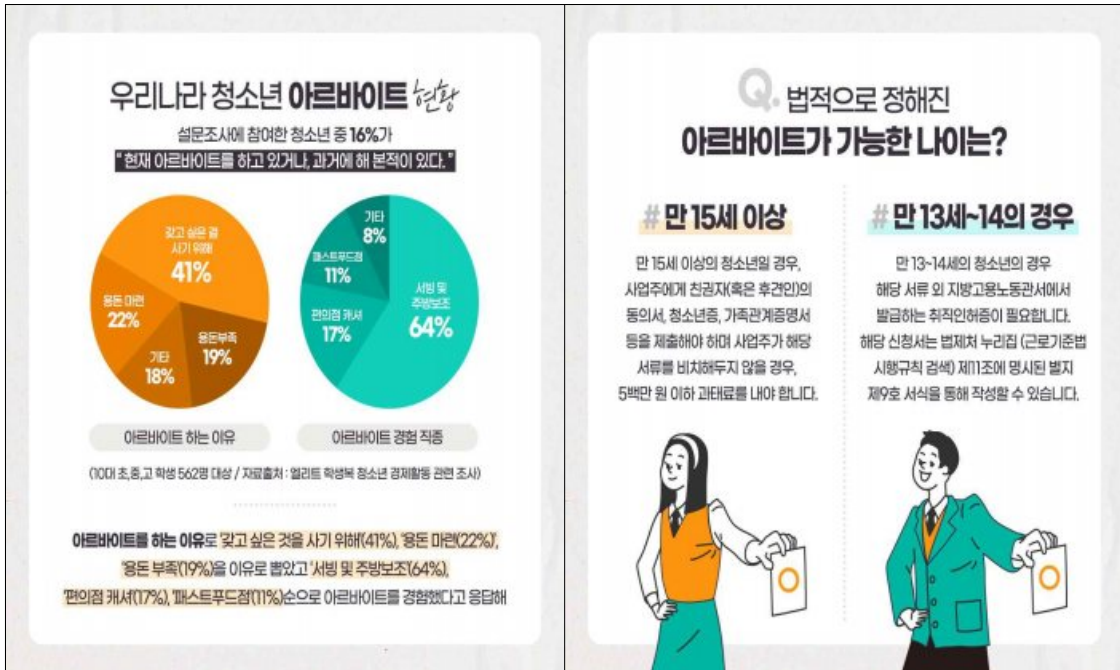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우리의 역할”

여운영 의원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우리의 역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운영 의원



한 조시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 중에서 16%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위해서 이지만 용돈마련이나 용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된 일은 식당 등과 같은 요식업 사업장에서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가장 많고, 편의점 캐셔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업무를 우리의 청소년들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저비용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노동 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 관련 규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노동행위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선 인식이 부족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취업 시에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보관하여야 하며, 만 13~14세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서류외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이 대부분 생략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장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10명 중 3명(32.2%)은 하루 7시간에서 10시간가량 근무한 경우도 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밤 10시 이후의 근로에도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3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열여덟 나이의 학생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잠수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규칙과 작업 매뉴얼만 제대로 교육시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으며 더불어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 것 또한 불행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생계나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사회의 예비노동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근로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대해 준다면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나 불법 노동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제 토론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이원희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원희 교수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2011년 광주기아자동차 현장 실습생이 쓰러지고 10년이 지난 올해 또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계속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일임을 확인하게 되었음

- 현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률은 2014년 이래 4차례나 법안이 발의되었고 3번이나 폐기되었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수진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며, 2021. 6.21 교육 기본법 개정안이 전용기의원 등 16인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 이수진 의원 등의 발의 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용기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은 아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상시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제 21조의2 신설을 담고 있음

- 이렇듯 국회에서의 경과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통해 제도화를 해왔음. 2021년 현재 노동교육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총 13개 교육청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 2곳임. 경기도는 특히 2021년 10.6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내에 구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대상과 교육시간을 명기하고 있음

<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현황(2021. 10. 17일현재)

순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개정 구분	부서
1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도교육청	2019. 7. 5	민주시민교육과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2016.1. 4.	미래교육정책과
3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2015.6.17	노동권익과
4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	2021.10.6	노동권익과
5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2021.5.6.	민주시민교육과
6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2019.6.1.	민주시민교육과
7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8.14	과학직업정보과
8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11.14	미래인재교육과
9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0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2015.7.30	노동정책담당관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9.9.30.	민주시민교육과
12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2020.12.17	민주시민교육과
13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7.13.	동아시아시민교육과
14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2021.7.1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5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2016.10.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11.20	미래인재교육과
17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2019.7.12.	미래인재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러나 이외에도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검색해보면 2021.10.17. 현재 지방자치법규에서 총 71건이 검색되고 있으며,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발제자가 정리하였듯이 5개 지역에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조례 내용은 지역마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르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 내에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정도는 각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 타 지역과 비교를 하자면, 조례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방향과, 대상, 교육시간 및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 연수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시간을 학기당 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도 연간 2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가까운 충청북도 교육청도 모든 재학생에 대해 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청의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교육을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음

○ 각 지역의 조례에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조례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협력적으로 각 자치단체 내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내용과 시간, 대상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충청북도 교육청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제10조에 ‘충청북도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발제의 맥과 유사함

- 전담기구의 설치에 조례내용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됨. 사실상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례가 있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학교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통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사업, 노동인권관련 구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송태수외(20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의 역할이나 효과에 대한 측면은 상세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적어도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곳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특히 지역단위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기반을 만들고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민관의 역할 정립과 협력방식이 매우 중요하여 일부 갈등을 초래하거나 원활한 방식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

○ 노동인권감수성의 함양과 진로와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함.

- 일부에서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노동법 중심의 강의만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보다는 지식전달에 머무르는 경우도 상당함. 일례로 학생들의 진로교과 교과분석에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동3권조차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교과서가 있음.

- 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토론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살피면서 충남지역에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추진력을 통해 청소년이 미래의 노동자로서 성숙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변화”

이현주 장학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변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이현주 장학사

들어가는 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었고, 충남에서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5.2.30.)가 제정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이 이루어졌고, 2017.11.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교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사회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은 현장실습 전 노동관계법 숙지를 위한 교육을 넘어 인간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찾아가고 비판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운영

2015년부터 사회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강사의 교육을 학생들과 같이 들으며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키웠던 교사들이 있을 정도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은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던

사업이다.

2021 현재는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로 진행되고 있다.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현황

대상	주요내용	강사	비고
중학교	진로와 연계한 노동교육	교사	
일반고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시민단체강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시민단체강사	
교원	노동인권 상담 사례 공유	노무사	

○ 교원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2019년 충남학생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은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선택하였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 연수는 교육부에서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현장실습 담당 교사는 의무적으로 노동인권 연수를 이수해야 했고 2018년도까지만 실시되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교원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 연수는 물론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2021년 현재 200여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였고 소속 학교 노동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강사로도 활동 중에 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학교 관리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면 학교 관리자 연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수업자료 개발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 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 만큼 중요한 과제는 ‘노동인권 수업자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노동인권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 노동인권 수업자료집 개발 현황(2018년 ~ 현재)

년도	교육 자료명	대상	비고
2018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자료	고등학생	CD
2019	알기쉬운 알바이야기(웹드라마) -1편 근로계약서 -2편 임금체불	중·고등학생	USB
2019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사례집 -사례로 알아보는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이야기 I	중·고등학생	소책자
2020	알기쉬운 알바이야기(웹드라마) -3편 세상은 넓고 배달은 많다. -4편 알바도 사람이다.	중·고등학생	USB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사례집 -사례로 알아보는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이야기 II	중·고등학생	소책자
20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수업자료집 - ‘고등학생, 노동인권을 만나다’ - 수업자료집 8권, 보드게임 4편	고등학생	책자 보드게임
2021	알기쉬운 알바이야기(웹드라마) -5편 알바의 품격, 6편 사장님의 품격	중·고등학생	USB
2021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수업자료집 - ‘중학생, 노동인권을 만나다’ - 수업자료집 6권, 보드게임 4편	중학생	책자 보드게임
2021	노동인권 원격연수 개발(15차시) - 교사, 노동인권을 만나다.	중등교원	연수

▶ 노동인권 수업자료집

알기쉬운 알바이야기(웹드라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사례집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수업자료집



○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일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충남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민간 위탁운영하여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그 후 도의회에서 민간 위탁운영이 부결되어 충청남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 권역별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여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충남청소년문화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고문노무사 뿐 아니라 상담사도 위촉하여 권리구제 뿐 아니라 상담활동 또한 강화하였다.

노동인권교육의 변화, 그리고 어려움

○ 교육과정속에서의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은 대부분 외부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회 교과 등 일부 교과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보다는 지식 전달 중심의 노동법에 대한 주제들이 대부분이다. 외부 강사의 일회성 교육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의무 교육들로 인하여 외부 강사의 특강을 실시할 시간이 없는 것도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 지려면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담론이 고루 포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의 노동인권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인권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 직업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은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과정 속의 한 과제로서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직업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으로 전환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교육 업무를

직업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도 보다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수업 시수에 대한 한계로 인한 노동법 중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노동의 소중함을 느끼고, 권리를 찾아가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필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사업주 대상 노동법교육도 중요하지 않은가?’

2019년 충남학생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에 관한 보고회에서 한 교사의 질문이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노동인권 인식개선이 필요함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이다.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2021.8.17. 제정되며 충청남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민간단체,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맺음말

‘학생들한테 무슨 노동인권이에요? 여기가 북한의 노동당이에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개소되며 여러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한 보호자의 민원전화 내용이다. 청소년의 일부는 현재의 노동자이며 대부분이 미래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하여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노동인권 교육이 사회과를 비롯한 일부 교과, 외부 강사의 특강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학교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021년 1월,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을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인간존엄’,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보다 훨씬 많은 교과와 교육 활동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장 시키고 노동인권교육이 법과 제도적 권리중심을 넘어, 진로 교육, 인문학 교육과 융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 토론

“청소년 노동인권의 어떤 부분을 목소리 내야 하는가”

음수빈 위원장
총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의 어떤 부분을 목소리 내야 하는가”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음수빈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음수빈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리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의 대표로 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7살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 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2년 째 활동하면서, ‘충청남도 청소년예산 선정을 위한 타운홀미팅’, ‘청소년인권 토론회100수다’, ‘충청남도청소년참여대회’, ‘참여예산학교’, ‘충청남도 정책제안대회’ 등 다른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많은 자리에 임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참여자로, 이후엔 목소리를 내는 발언자로, 지금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자와 심사위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들을 만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며 모두 필요한 이야기라는 중요성을 느꼈고, 그 목소리들을 대표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험해온 활동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매번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 노동인권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 의견들이 빠지지않고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 청소년의 부당함. 노동 청소년 나이 범위의 모호함, 청소년 고용 환경 등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첫 발걸음인 ‘노동’에서 많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큼 청소년들은 청소년 목소리로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양하게 여러 목소리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례제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조례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사업주들이 조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가 강력하게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하여 우리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중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제 4조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위 조례들에 묻힌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또한 묻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초발제를 해주신 신아롱 국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현장실습생인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 보지도 못한 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불의를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생을 놓아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노동 청소년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및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노동 청소년의 현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비용 부담이나 산재보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으로 우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배달노동 “산재보험 못받아“ 경향신문. 2021.04.18.)

우리 충청남도도 배달 노동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노동기본권 교육 등 교육들이 기본적인지만,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인식하게 하고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노동 청소년인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신 정세은 발제자님의 첫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을 예로 들자면, 청소년이 부당행위를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행위 재발방지 계약서 작성, 재발 방지 시 n개월 영업정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청소년고용업체는 정기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점검 또는 감사, 실습 파견기관처럼 실습일지 같은 근무일지 작성 및 제출 등 모니터링 강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의 노동 청소년들께 의견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 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에,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가 설치하여 많은 사례를 들을 수 있다면, 이에 맞는 사업과 보호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중 청소년 권익 확보 개선을 위해 많은 청소년들과 목소리 내어 ‘18세 선거권’ 을 얻어내게 된 것을 되돌아보면, 노동 청소년의 인권이 왜 보호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발전방향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제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청남도 내 노동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날까지는 저는 청소년과 함께 목소리를 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음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EMO

MEMO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인 쇄 : 2021년 10월

발 행 : 2021년 10월

발 행 인 : 박영의

발 행 처 :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

부대로 766, 3층

[두정동, 진암빌딩]

[비매품]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